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 731-6391/4 전송 731-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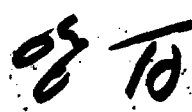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30420-1610

시행일자 1992. 8. 11.

(경유)

수신 각 안 참조

감조

취급		시	장
보존			
주책국장	권결		
주책개발과장	추진		
개발2계장	1		
기안	임성규		
		고 및 협조 총 제 관 법 무 담 당 관 사 계 장 회 계 심 사 계 장 개 량 계 획 계 장	협 조

제목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및, 주민공람공고

(제1안) 내부결재

1. 우리시관내 종로구 누상1 및 사직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코져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입안하고

2.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등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3. 건설부주개 30420-119(92.2.28)호와 관련하여 그(안)을 건설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가지 게재 (2종의 일간지에 조간, 석간 또는 1일 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다.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책과

라. 광고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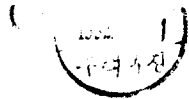
예산액: 1,432,200원

산출근거 : 3단 x 7cm x 31,000원 x 2가지) x 1.1(부가가치세)

= 1,432,200원

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무비, 사무관리비, 수송비 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



-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 입안도서 각 1부. 끝.

(제 2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서류제출



1. 건설부주개(30420-119'92.8.28)초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청취코자 별첨과같이 주민 공람공고 하였기 그(안)을 제출합니다.

가. 도시계획 입안(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초서

구별	지구명	위치	면적(㎡)
종로	누상1	종로구 누상동 100번지일대	12,985.2
"	사직	종로구 사직동 280번지일대	5,135.6

나. 공람기간 : 1992. 8. 12 - 1992. 8. 26 (14일간)

- 첨부 1.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관련서류 각 1부.
2. 공고안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신문개계 의뢰

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외피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 (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 게재 (2종의 일간지에 조간, 석간 또는 1일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다.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라. 공고예산

1) 예산액 : 1,432,200원

2) 산출근거 : 3단 x 7cm x 31,000원 x 2개지 x 1.1(부가가치세)
= 1,432,200원

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무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인론회관 청구에 의해 직불
첨부 공고문 3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제 4 안)

수신 종로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및 주민의견청취

1. 귀구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코져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 입안지로 표기발급할 것이며,

2.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바라며 공고문 사본을 구청및 동사무소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92.8.31까지 구청장의견서 첨부하여 보고하기 바람.

첨부 1. 공고문 사본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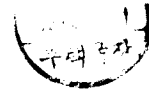
2. 도시계획안 도서 각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및 주민공람공고 홍보

1. 우리시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 음을 통보하오니 귀부서의 의견을 92.8.26.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본 기한내 제출치 않음시는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안 1부

2. 입안도면 각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제 6 안)

수신 기획관리실장

참조 기획담당관

제목 시의회 의견청취

1. 우리시관내 종로구 누상1및 사직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부의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의견청취코져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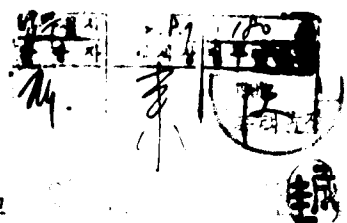
첨부 시의회 부의안건 요약서 2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 193 호

공 고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코져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져야때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2. 8. 12.

서울특별시 장

가. 공람기간 : 1992.8.12. - 1992.8.26. (14일간)

나. 공람내용

○ 도시계획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공람및 의견서 제출장소
누상1	종로구 누상동 100번지일대	12,985.2	종로구 주택과
사 직	종로구 사직동 280번지일대	5,135.6	"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사직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2.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개 요

- 위치 : 종로구 사직동 280번지일대
- 면적 : 5,135.6m² (1,554평)
 - 국.공유지 : 436.5m² (132평)
 - 사유지 : 4,699.1m² (1,422평)
- 가구수 : 91세대
 - 가옥주 : 48
 - 체입자 : 43
- 건축물 : 54동
 - 유허가 : 45
 - 무허가 : 9

2. 결정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

3. 상정사유

- 사직터널 입구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

4. 참고사항

- 주민동의 : 85%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누상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92.8. .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개요

- 위치 : 종로구 누상동 100번지일대
- 면적 : 12,985.2m² (3,928평)
 - 국.공유지 : 2,865.3m² (867평)
 - 사유지 : 10,119.9m² (3,061평)
- 가구수 : 261세대
 - 가옥주 : 67
 - 세입자 : 194
- 건축물 : 111동
 - 유허가 : 111
 - 무허가 : 0

2. 결정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

3. 상정사유

- 고지대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 한옥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일약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

4. 참고사항

- 주민동의 : 75%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일부종치지구

都市計劃立案調書

1. 目的

○ 老朽不良建築物이 密集된 地域 또는 公共施設의 整備狀態가 不良하여

住居環境이 劣惡한 地域을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

2. 要求內容

區分	計	新規指定	地區變更	備考
總計	2	2		
鍾路	2	2		

○ 現況

連番	區域名	對象物 (棟)	家口數(家口)			要請者	同意率 (%)
			計	家屋主	賃入者		
1	樓上 1	111	261	67	194	住民	75
2	社稷	54	91	48	43	"	85

3. 住居環境改善地區 指定 調書

區分	地區名	位置	面積(m ²)	備考
新規	樓上 1	鍾路區 樓上洞 100番地 一帶	12,985.2	
"	社稷	鍾路區 社稷洞 280番地 一帶	5,135.6	

樓上1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1. 現況

- 位置 : 鍾路區 樓上洞 100番地 一帶
- 土地 및 建築物

區 分	土 地 (m ²)			建 物 (棟)		
	計	國公有地	私 有 地	計	有許可	無許可
申請案	12,985.2	2,865.3	10,119.9	111	111	0
檢討案	12,985.2	2,865.3	10,119.9	111	111	0

- 既存 都市計劃 現況

區 分	面 積 (m ²)	備 考
住居地域	12,985.2	
風致地區	178	

2. 都市計劃立案 現況

- 住居環境改善地區 指定

區 分	地 區 名	面 積 (m ²)	備 考
檢討案	樓上 住居環境改善地區	12,985.2	住民要求案과 같음

3. 地區指定 事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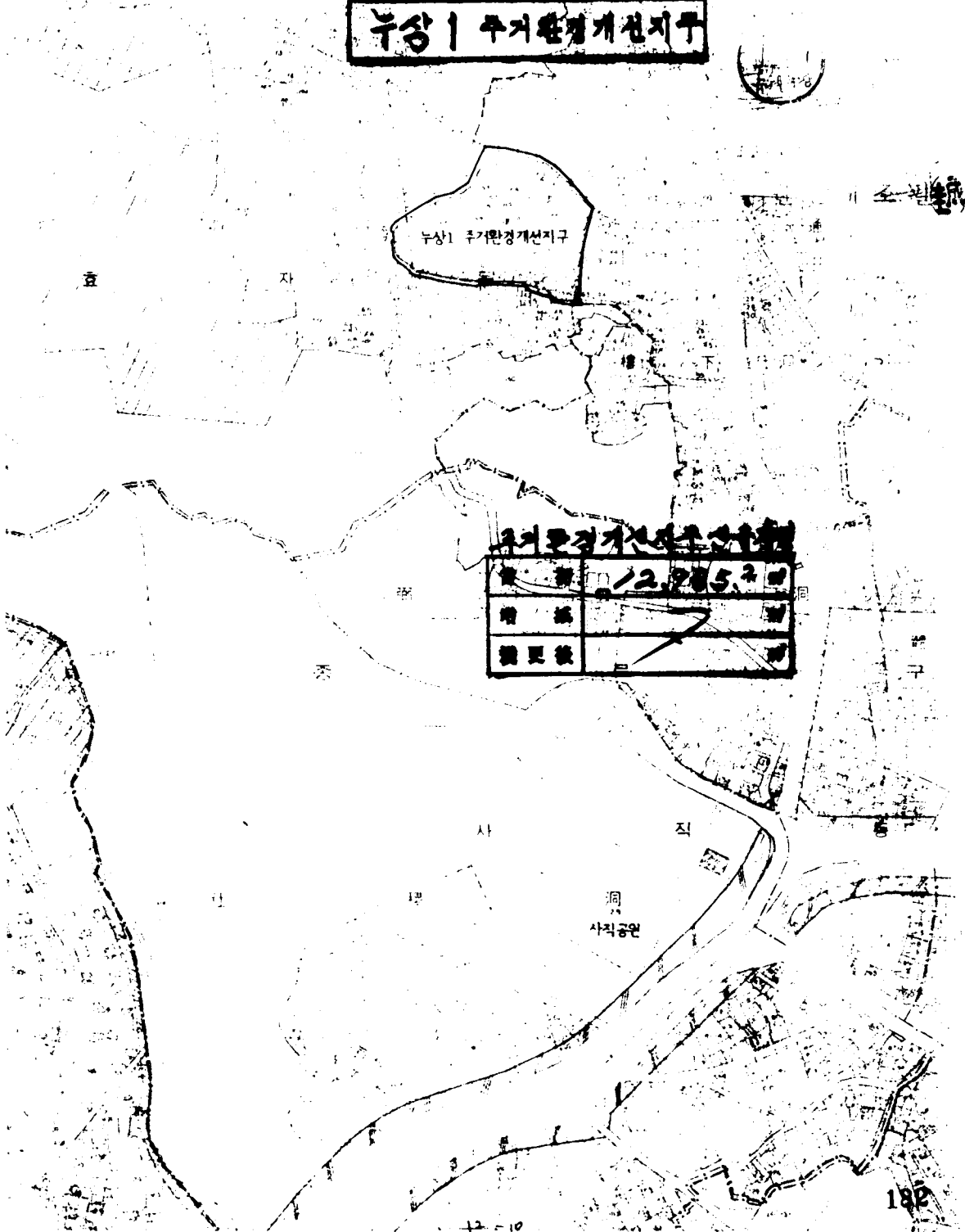
- 住民 要求案 : 30年以上된 老朽不良建築物 密集地域으로 公共施設이 未備하여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 要함
- 檢 討 意 見 : 老朽不良建築物이 密集되고 都市基盤施設이 脆弱한 地域으로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코자 함

부상1 주거환경개선지구

부상1 주거환경개선지구

부상1 주거환경개선지구

면적	2,285.2㎡
증/축	
變更後	



社稷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1. 現況

- 位置 : 鍾路區 社稷洞 280番地 一帶
- 土地 및 建築物

12

區 分	土 地 (㎡)			建 物 (棟)		
	計	國公有地	私有地	計	有許可	無許可
申請案	5,135.6	436.5	4,699.1	54	45	9
檢討案	5,135.6	436.5	4,699.1	54	45	9

- 既存 都市計劃 現況

區 分	面 積 (㎡)	備 考
住居地域	5,135.6	
風致地區	5,135.6	

2. 都市計劃立案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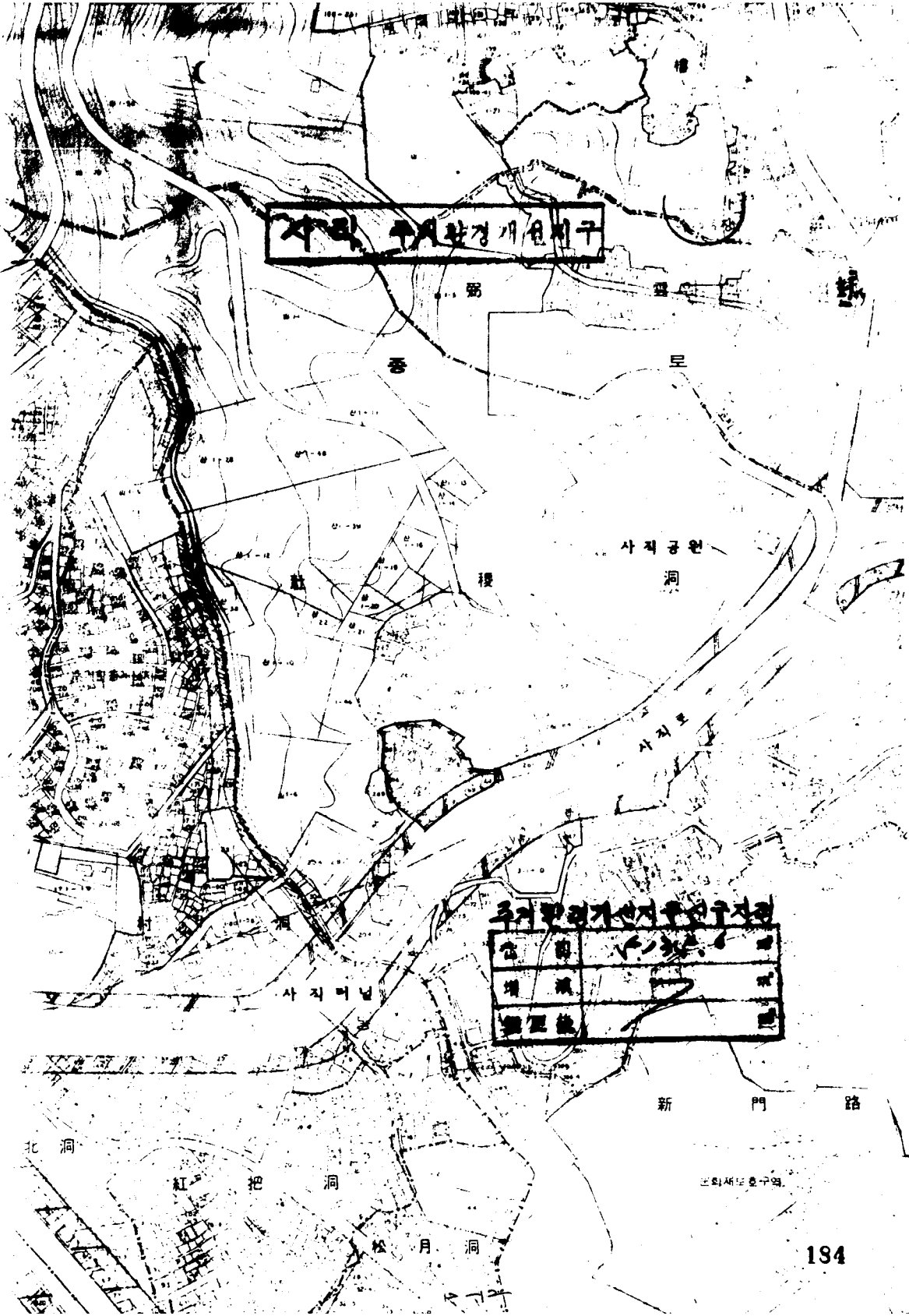
- 住居環境改善地區 指定

區 分	地 區 名	面 積 (㎡)	備 考
檢討案	社 稷 住居環境改善地區	5,135.6	住民要求案과 같음

3. 地區指定 事由

- 住民 要求案 : 30年以上된 老朽不良建築物 密集地域으로 公共施設이 未備하여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 要함
- 檢 討 意 見 : 老朽不良建築物이 密集되고 都市基盤施設이 脆弱한 地域으로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코자 함

사직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상징표

상	동	상	동
중	동	중	동
중	동	중	동